

---

**-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-  
「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 
가이드라인」**

---

2024. 5

**관계부처 합동**

# 목 차

1. 개요 .....	2
2. 「관광진흥법」 개정 주요 내용 .....	3
3. 카지노업 유사행위 정의 .....	4
4.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 운영 방향 .....	6
5. 예상 질문 .....	8

# I. 개요

## □ 목적

-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\*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, 불법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를 '카지노업 유사행위'로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(관광진흥법 개정)가 마련
  - \* 홀덤(Holdem: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)과 पो퍼(Pub)의 합성어로,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
-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, 카지노업 유사행위 성립요건, 합법적인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(홀덤대회)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합법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단속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□ 「관광진흥법」 개정 내용

- '카지노업 유사행위' 개념을 신설하여,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 내 불법도박을 「관광진흥법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
  - ※ 법 개정으로 '카지노업 유사행위'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상 '불법사행산업'에 포함
  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및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으로써 단속의 실효성 확보
-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하여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 내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

개 정 전	개 정 후
<p>&lt;신 설&gt;</p> <p>제8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6조의2(유사행위 등의 금지)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81조(벌칙) ① -----7년----- 7천만원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제26조의2를-----자(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</p> <p>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.</p>

## II. 개정 주요 내용

- ◆ 카지노업 유사행위: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

구 분	기 존	「관광진흥법」 개정 후
법 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형법(도박장소개설죄)</li> <li>○ 식품위생법 (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형법(도박장소개설죄)</li> <li>○ 식품위생법 (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</li> <li>○ 관광진흥법 (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)</li> </ul>
처 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형법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</li> <li>○ 식품위생법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형법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</li> <li>○ 식품위생법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</li> <li>○ 관광진흥법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)</li> </ul>
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감시 여부	X	감시 대상에 포함
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신고 포상금 지급	X	최대 5천만원

### III. 카지노업 유사행위의 의미

◆ 카지노업 유사행위: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

※ 관계 법령·판례에 따를 때,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됨

- ①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(카지노업 경영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)가
- ② 영리 목적(사업장을 운영하여 재산상 직·간접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)으로
- ③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 영업(게임) 종류를 제공하여
- ④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

#### ①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

⇒ 카지노사업자란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광진흥법·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·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,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‘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’에 해당함

#### ② 영리 목적

⇒ 영리 목적이란 사업장 운영을 통해 재산상 직·간접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,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음

⇒ 판례에 따르면\*, 손님들이 적립 등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자의 일반음식점을 다시 찾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

\* 특히 적립한 포인트는 당일에 사용할 수 없어 손님들이 다시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오도록 유도하였는 바,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 (대전지방법원 2018.4.27. 선고 2017고정861)

### ③ 「관광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제공

- ※ 「관광진흥법」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※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35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8과 같다.

<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>

테이블게임	가. 룰렛(Roulette)	나. 블랙잭(Blackjack)	다. 다이스(Dice, Craps)
	라. 포커(Poker)*	마. 바카라(Baccarat)	바. 다이 사이(Tai Sai)
	사. 키노(Keno)	아. 빅 휠(Big Wheel)	자. 빠이 까우(Pai Cow)
	차. 판 탄(Fan Tan)	카. 조커 세븐(Joker Seven)	타. 라운드 크랩스(Round Craps)
	파. 트란타 코란타(Trent Et Quarante)	하. 프렌치 볼(French Boule)	거. 차카락(Chuck - A - Luck)
	너. 빙고(Bingo)	더. 마작(Mahjong)	러. 카지노 워(Casino War)
	전자테이블 게임	상 동	
머신게임	가. 슬롯머신(Slot Machine)	나. 비디오게임(Video Game)	

\*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에서 제공되는 텍사스홀덤 등은 포커의 한 종류로서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함

- ⇒ 카지노업의 영업(게임) 종류란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8에서 규정하는 룰렛·블랙잭·다이스·포커·바카라 등 18종의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, 슬롯머신·비디오게임 2종의 머신게임을 의미
- ⇒ 법령 해석\*에 따르면, 규칙이 일부 변형된 게임을 제공하더라도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할 수 있음

\*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속하는 게임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, 규칙이 일부 변형된 게임이더라도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

### ④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

- ⇒ ‘재산상의 이익’이란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
- ⇒ 판례에 따르면\*, 홀덤โป๊กเกอร์에서 획득한 칩·시드권·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재산상의 가치가 인정됨

\*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따거나 잃게 되는 칩은 단순한 게임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,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 (대전지방법원 2018.4.27. 선고 2017고정861)

## IV. 홀덤편 및 홀덤편대회 운영 방향

### < 합법 홀덤편·홀덤편대회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>

- 게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환전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
-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·포인트·시드권 등이 현금·현물·암호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고 게임 참여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함
  - 특히 시드권의 경우 이를 획득한 우승자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배부된다면, 불특정 사인 간 금전거래가 가능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음
- 홀덤편대회의 상금이나 운영비가 주최자 자체 조달(후원 등)이 아닌 참여자의 참가비에서 비롯된다면, 게임을 통해 게임 참여자들 간 재산상의 이익·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음

※ 아래 사항은 불법 운영의 예시를 나열한 것으로서, 열거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안별 카지노업 유사행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불법 영업에 해당할 수 있음

#### □ [예시1] 불법 시드권 발행·배부

- 게임을 통해 획득하였으나 현금·현물 등으로 교환 가능한 시드권
- 시드권을 획득한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시드권

#### □ [예시2] 불법 포인트 지급

-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
- 주류·음식 등 현물 구입, 홀덤편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

### □ [예시3] 불법 홀덤대회 개최

- 참여자들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걷어 그 참가비를 원천으로 상금·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\*

\* (대법 2001도5802) 고스톱대회의 입상자들이 지급 받기로 한 상금은 참가자들의 참가비 총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, 상금의 주요한 원천이 참가비에 있고, 우연의 결과에 의해 참가비 획득이 정해지는 이상 '도박'에 해당한다.

- 상금·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, 참가비는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

\* (제주지방법원 2014고정641) 도박은 참가자들이 거는 재물과 득실을 다투는 재물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바, ...(중략)... 참가비가 상금의 재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 참가비는 참가자들이 게임을 위해 건 재물에 해당한다.



## V. Q&A

Q. 금전거래가 없는 게임 자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?

-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금전거래(식음료·경품 제공, 환전행위 등)가 포함되지 않는 게임 제공은 가능합니다.

Q. 딜러, 테이블, 칩 등 관련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으나,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홀덤게임 제공은 가능한지?

- 게임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·손실, 즉 일체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게임 제공은 가능합니다.

Q.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는 홀덤뽑 등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지?

- 홀덤게임 등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게임은 사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- 이에 홀덤게임 등을 제공하는 업소에서 금전적 거래가 직·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의 제한이 필요합니다.

※ 「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」  
제정 추진 중이며 '24년 5월 중 시행 예정(여성가족부)

Q.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지?

- 게임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시드권 제공은 가능합니다.
- 다만, 어떤 형태로든 시드권이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금전거래에 해당될 수 있어, 해당 시드권 제공 시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을 제공할 경우, 불특정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Q. 참가자들 간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에게 수수료 등 중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?

- 참가자들이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였으며, 게임을 하기 위해 해당 일반음식점을 찾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성이 인정되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Q. 홀덤펍 사업자가 아닌, 홀덤펍 이용자도 처벌되는지?

- 획득한 칩·시드권·포인트 등을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, 현금 등으로 교환한 홀덤펍 이용자의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Q.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 목격 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?

- 증거를 갖추어 경찰청(112)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(1855-0112)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